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4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이수진·송옥주·신영대

이성윤 • 박해철 • 민형배

서영교 • 한정애 • 박홍배

김정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가사근로자법'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장기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어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애로가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여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한편 가사근로자 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가사서비스종사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에 포함시켜 가사근로자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장의2신설 등).

법률 제 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사서비스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1장의2(제6조의2 및 제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의2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기본계획 등

- 제6조의2(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에 관한 목표와 방향
 - 2. 가사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3. 가사서비스 제공 여건 개선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조사·연 구 등에 관한 사항
- 5.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가사서비스종사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3(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 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 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를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1의2.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의견을 진술한 경우

제24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28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또는 거짓 의견을 진술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①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가사서비스종사자"란 가사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			
	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u>얻는 사람을 말한다.</u>			
<u> <신 설></u>	제1장의2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기본계획 등			
<u><신 설></u>	제6조의2(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체계적으			
	로 지원하고 가사서비스의 품			
	<u>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u>			
	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기			
	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			
	<u>야 한다.</u>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가			

- <u>사서비스 품질 향상에 관한</u> <u>목표와 방향</u>
- 2. 가사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3. 가사서비스 제공 여건 개선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활성 화에 관한 사항
- 4.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가

 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5.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가사서비스종사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 기본법」 제 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

<신 설>

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 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 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실태조사) ① 고용노동 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 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요구를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

제20조(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전환 중요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2. (생략)

제21조(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 < 삭 제> 장관은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 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 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 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u>다.</u>
세20조(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u>고용정책심의회</u>

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1.·2. (현행과 같음) <삭 제>

- <u>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u>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 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
-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
 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생 략) <신 설>

- 2. ~ 8. (생 략)
-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 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 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의견을 진술한경우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_)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6조의3	제2형	항에 [다른 >	자
료 제출 또는	의	견 진술	술 요	7
에 정당한 시	유	없이	따르기	기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 자료

를 제출하거나 거짓 의견을

진술한 경우

<삭 제>

2. ~ 8. (현행과 같음)

- 10. (생략)
- ② ~ ⑥ (생 략)
-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 위탁) ① (생략)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 1. (생략)
 -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 사
 - 3. (생략)
 - ③ ④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 1. (생략)
- 2. (생 략)
-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 |

- 10.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위탁) ① (현행과 같음)

1.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삭 제>

- 3.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 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또는 거짓 의견을 진술한 자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현행과 같음)

<삭 제>

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 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또 는 거짓 의견을 진술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